

고 발 장

고 발 인 김 두 수 외 2

피고발인 박 영 수 외 1

대검찰청

귀중

고 발 장

고발인 1. 김 두 수

2. 조 국

3. 이 재 명

피고발인 1. 박 영 수(당시 평택지청장)

2. 이 정 회(당시 평택지청 검사)

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의 직무유기 등 범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혐의로 고발하오니 엄중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

다 음

1.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지위

고발인은 시민에 의한 참여민주주의의 창달과 국가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 참여연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.

피고발인 이정희는 평택지청 근무당시 본건 심규섭 의원의 업무상 횡령 및 뇌물공여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 수사검사이고 동 박영수는 평택지청의 지청장으로서 동 이정희 검사를 지휘하던 사람입니다.

2.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

가. 심규섭 의원에 대한 혐의사건

원래 이 사건은 경문대학의 양도 양수 및 사학비리와 관련하여 경문대학 교수협의회가 전 학장인 전재욱과 현 학장인 감상호를 사립학교법위반등의 혐의로 평택지청에 고발한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.

평택지청이 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문대의 전 이사장인 심규섭의원의 등록금 횡령사실과 뇌물공여사실이 문제되어 이를 함께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.

1999년 11월 18일 피고발인 이정희검사는 자신이 담당검사로서 심규섭의원을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그 피의자신문조서 중에는 심규섭의원이 과거 경문대의 이사장으로서 교육부 관리에게 1

천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사실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경문대학 (구 평택공과대학) 교비 12억원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.

나. 피고발인들의 혐의내용

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고발인 이정희는 이 사건을 은폐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

(1) 피고발인 이정희 검사의 사건 은폐 근거

첫째, 검사가 수사중인 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이 아니라 제3의 참고인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다면 그 피의자는 인지절차를 거쳐 입건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어느 정도 수사를 진행하여 새로운 혐의가 드러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받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.

둘째, 더구나 위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심규섭의원은 뇌물공여사건에 대하여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위 피의자신문조서가 인지를 한 것임이 명백함을 증명해 주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미 자백까지 한 사건이 오리무중으로 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. 즉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거기서 자백까지 하였다면 대체로 기소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고 가사 그 후에 드러난 결정적인 증거 때문에 입건한 것이 잘못되었다면 무혐의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

셋째,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이정희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중국처분도 하지 않은 채 후임검사에게 인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후임검사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을 보지도 못했다고 하고 있어 이 사건은 공중에 떠버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. 통상적인 형사사건처리에 있어 이같은 처리절차는 찾아 볼 수 없는 것입니다.

(2) 심규섭의원의 뇌물공여사건의 진실

그러나 고발인이 보기에선 더 나아가 위 사건이 무혐의도 될 수 없다고 봅니다. 뇌물공여사건은 쉽사리 자백을 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심규섭의원이 당시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지구당 위원장으로 그 지역의 유력한 인사였던 상태에서 자백까지 하였다면 충분한 증거와 추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

더군다나 위 뇌물을 심규섭의원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교육부의 김용현 국장은 위 혐의로 교육부로부터 파면까지 당하였고 심지어 해외도피까지 하였던 것입니다. 이것은 심규섭의원의 뇌물공여사실이 검찰에서 뿐만아니라 교육부에까지 알려져 그러한 사실을 교육부가 확인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. 김용현국장이 돈받은 사실이 없다면 왜 파면조치를 했을 것이며, 본인의 죄가 없다면 왜 김용현 국장은 해외로까지 도피를 했겠습니까?

심지어 SBS의 한 프로그램에 심규섭의원이 나와 자신이 교육부

관리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시인하는 장면이 방송되기까지 하였습니다.

(3) 피고발인 박영수의 혐의 근거

위와같이 명백한 심규섭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가 피의자신문조서까지 작성된 상태에서 실종되었다면 이 과정에서 피고발인 이정회 검사의 직속 상관이고 직무상의 감독책임이 있는 피고발인 박영수 당시 지청장이 이를 몰랐을 리 만무한 것입니다.

피고발인 박영수 부장검사는 한 언론사의 기자에 대하여 심규섭 의원의 내사중지라고 주장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박상길 대검 수사기획관은 내사한 사실조차 없다고 말함으로써 서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피의자신문조서까지 작성한 상태에서 내사중지를 했다면 당연히 그 기록과 내사중지결정을 한 근거가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.

3. 결론

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엄중한 수사는 법치주의 확립에 결정적인 중추 역할을 하기 마련입니다. 민주당 심규섭의원에 관련된 검찰의 수사와 처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법치주의를 그 근거에서부터 흔드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.

검찰이 통상적인 절차를 밟아 수사를 진행했다면 당시 심규섭의원은

이미 구속기소되었어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. 그런데 검사가 참고인에 불과하였던 심규섭의원을 상대로 혐의가 인정되어 입건되어야 받을 수 있는 피의자신문조서까지 작성한 마당에 그 사건이 온데 간데 없는 것이라면 어느 국민이 그 수사가 공정하였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. 더구나 지금에 와서 당시 관련된 검사들은 저마다 주장하는 바가 달라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상태입니다.

증 거 서 류 (추후제출)

증제1호증	진상조사보고서(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)
증제2호증	피의자신문조서(심규섭)
증제3호증	진술서(심규섭)
증제4호증	녹취서(정해원)
증제5호증	신문기사(내일신문)

2001년 7월 2일

고발인 김두수

조 국

이재명

대검찰청

귀중